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8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출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구성 추진
- 2026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1) 본청 담당관·과 조정 : (현행) 2담당관 30과 ⇒ (조정) 2담당관 31과 (증 1과)
 - 분 과: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명칭변경: 민원여권과 → 원스톱민원과
 - 여성아동과 → 성평등가족과

나. 정원조정: (현행) 총 정원 1,103명 ⇒ (조정) 1,132명 (증 29명)

- 집행기관: (현행) 1,077명 → (조정) 1,105명 (증 28명)
- 의회사무기구: (현행) 26명 → (조정) 27명 (증 1명)

다. 사무조정

1) 신설

- 지역 내 자살예방 총괄 기획에 관한 업무(성평등가족과)

2) 이체

-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 : 복지정책과 → 노인복지과
- 초등돌봄에 관한 업무 : 평생교육과 → 보육정책과

- 영유아·아동 돌봄에 관한 업무 : 여성아동과 → 보육정책과
-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일부개정안)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덧붙임(비용추계서)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6. 8. 4.~2026. 8. 10.(6일간)

나. 의견 내용: 해당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의견 없음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 평가: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 평가: 평가 제외 대상

9. 참고사항: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를 “원스톱민원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 보육정책과, 여성아동과”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정책과, 성평등가족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03명이며”를 “1,132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77명”을 “1,10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6명”을 “27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원스톱민원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원스톱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민원여권과장·관계”를 “고객·원스톱민원과장·관계”로, “민원여권과장은”을 “원스톱민원과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각각 “원스톱민원과장”으로 한다.

부서명		기획조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조정과장 채 상 호
	팀장 직위·성명	조직성과팀장 임 혜 경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 도 원 (031-790-5543)

[별표 1]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하남시청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 신장도서관	하남시 하남대로 740(신장동)
하남시 나룰도서관	하남시 덕풍북로 180(덕풍동)
하남시 덕풍도서관	하남시 역말로 14(덕풍동)
하남시 세미도서관	하남시 세미로1길 15(풍산동)
하남시 디지털도서관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2(망월동)
하남시 미사도서관	하남시 아리수로 545(망월동)
하남시 위례도서관	하남시 위례대로 230(학암동)
하남시 감일도서관	하남시 감일순환로 171(감이동)
하남시보건소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미사보건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망월동)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하남시 감일순환로 181(감이동)
친환경사업소	하남시 미사대로 710(신장동)
평생교육원	하남시 아리수로 545(망월동)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검단남로 48(하산곡동)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신장1로27번길 13(신장동)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대청로21번길 32(신장동)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덕풍공원로 110(덕풍동)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덕풍공원로 12(덕풍동)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덕풍서로 66(덕풍동)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9(망월동)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아리수로 531(망월동)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조정대로 80(풍산동)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감북로 39(감북동)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감일순환로 175(감이동)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위례순환로 310(학암동)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서하남로 490(춘궁동)
초이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초이로 65(초이동)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7.1% 이내	25.2% 이내	31.2% 이내	25.7% 이내	9.6% 이상

2. 연구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율	3%이내	97%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15% 이내	15% 이내	30% 이내	30% 이내	10% 이상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32	1,132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118	1,118				
	3급	1	1				
	4급	12	8	1	1	2	
	5급	61	33	2	6	6	14
	6급 이하	1,044	1,044				
별정직 계		7	7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6	4	2			
연구직 계		6	6				
	연구사	6	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 에 자치행정과, <u>민원여권과</u> , 정 보통신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생 략)	제6조(자치행정국) ① ----- ----- <u>원스톱민원과</u>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 정책과, <u>노인장애인복지과</u> , 보육 <u>정책과</u> , <u>여성아동과</u> 를 둔다. ② (생 략)	제8조(복지국) ① ----- ----- <u>노인복지과</u> , <u>장애인복지</u> <u>과</u> , <u>보육정책과</u> , <u>성평등가족과</u>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정원의 총수) 하남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u>1,103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077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6명</u>	제21조(정원의 총수) ----- ----- <u>1,132명</u> 이며--- -----. 1. ----- <u>1,105명</u> 2. ----- <u>27명</u>

참고(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정원의 총수) 하남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103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1조(정원의 총수) ----- ----- <u>1,132명</u> -----.							
1. 집행기관의 정원: <u>1,077명</u>								1. -----: <u>1,105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26명</u>								2. -----: <u>27명</u>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3조 관련)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총 계		1,103	1,103					총 계		1,132	1,132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	---				
	시장	1	1						시장	---	---				
일반직 계		1,090	1,090					일반직 계		1,118	1,118				
	3급	1	1						3급	---	---				
	4급	12	8	1	1	2			4급	---	---	---	---	---	
	5급	60	32	2	6	6	14		5급	61	33	---	---	---	---
	6급 이하	1,017	1,017						6급 이하	1,044	1,044				
별정직 계		6	6					별정직 계		7	7				
	5급상당	1	1						5급상당	---	---				
	6급상당 이하	5	3	2					6급상당 이하	6	4	---			
연구직 계		6	6					연구직 계		---	---				
	연구사	6	6						연구사	---	---				

관계법령 발췌서

1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

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29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 기준인력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한다.
- 1차년도 추계분에 순증인력 실제 배치 기준시점(2026년 10월 예정) 반영
- 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적용
- 2026년 통합돌봄 증가인력은 국고보조금 일부 지원(90,750천원)
- 2026년 하남시 예산서 인건비 기준 작성으로 실제 소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나. 추계결과

- 인건비 증가내역

- 증원 직급별 단가

(단위: 천원)

구 분	총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9	-	1	3	3	7	15	
인 건 비 (직급별)	1,233,235	-	88,241	69,043	49,203	39,953	34,039	
증 가 액		-	88,241	207,129	147,609	279,671	510,585	

※ 기준인력 정원 증원에 따라 2026년 인건비 기준 직급별 비용추계서 작성 잠정 추계로 직급·직렬별 변동 가능

- 연도별 소요인건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3개월)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 요 액		308,309	1,270,232	1,308,339	1,347,589	1,388,017	5,622,486
인 건 비	소 계	308,309	1,270,232	1,308,339	1,347,589	1,388,017	5,622,486
	시 비	308,309	1,179,482	1,308,339	1,347,589	1,388,017	5,531,736
	국 고 보 조 금	-	90,750	-	-	-	90,750

※ 공무원 인건비 인상·동결 등 감안하여 연 3% 인상 기준으로 작성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지원금액(통합돌봄 증원인력)을 제외한 공무원 인건비는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과장 채상호